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4일, 김도읍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4.7.17.)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8.21.)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도읍)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이라 함)」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5)에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1)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²⁾.

현행 별표에서는 총 113개의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³⁾이 의제⁴⁾되는 사업은 총 94개임.

여기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로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6. (생략)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이 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필요성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⁵⁾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2023년 「가덕도신공항법」⁶⁾ 개정·시행('23.4.18.)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하여)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조의²⁷⁾를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③ 입법목적 부합성(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 영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④ 공익 우월성(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 ⑥ 수용 필요성(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⑦ 공익 지속성(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 등임.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되는 사업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행 별표 제2호(9)에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점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⁸⁾과는 달리, 「가덕도신공항법」은 그보다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때에 사업인정을 의제함으로써 보상절차를 앞당기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원안 의결함.

8) 「공항시설법」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